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신규시설물 직영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과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및 복지 시책사업 추진인력 보강을 위하여 2011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552명 → 1,564명(+12명)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 정무직 : 1명(변동없음)
- 일반직 : 1,204명 → 1,217명(+13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0명(변동없음)
 - 5급 : 77명(변동없음)
 - 6급이하 : 1,116명 → 1,129명(+13명)
- 별정직 : 27명(변동없음)
- 연구직 : 2명(변동없음)
- 지도직 : 33명(변동없음)
 - 지도관 : 3명(변동없음)
 - 지도사 : 30명(변동없음)
- 기능직 : 285명 → 284명(△1명)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451,505천원 정도

- 일반직 정원증원 : 434,873천원
 - 7급 54,557천원 × 3명 = 163,671천원
 - 8급 34,997천원 × 2명 = 69,994천원
 - 9급 28,744천원 × 7명 = 201,208천원
- 기능직 직급조정 : 16,632천원
 - 9급 ← 10급 8,316천원 × 2명 = 16,632천원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52명”을 “1,5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24명”을 “1,53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64	1,56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17	1,217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7	27	3	4	4	12	27
6급이하계	1,129	1,129					
별정직 계	27	27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27	27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284	28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552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564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524명</u>	1. ----- : <u>1,536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